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영업비밀 보호 문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정지은

[www.spo.go.kr/seoul](http://www.spo.go.kr/seoul)

# 목 차

## 01 들어가며

## 02 한국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제도

## 0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영업비밀

## 04 사례

- GPL 라이선스 위반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례
- 게임물 소스코드 침해 사례
- 웹사이트 소스코드 파일 침해 사례
- 위젯 플랫폼 서비스 소스코드 침해 사례

## 05 마치며

# 들어가며

- 수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발전**에 지대한 기여
- 오픈소스 사용 시 해당 **라이선스** 문제 - 자유 이용
- 해당 라이선스 위반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야기
-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 보호시 **저작권, 영업비밀**이 중요한 역할
- 오픈소스에 있어 **영업비밀성** 인정되는지
- 라이선스 관련 저작권 내지 계약법과 영업비밀과의 **조화** 문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한국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제도



# 의 의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그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 요건

## 경제적 유용성

현실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효용성이 있는 유용한 정보,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

## 비밀관리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 타인이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주의·노력에 의하여 비밀성이 유지되어야 함

## 비공지성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

# 침해유형

영업비밀을 부정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

부정취득된 영업비밀을 악의. 중과실로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

선의취득 후 악의. 중과실에 의한 사용. 공개행위

영업비밀을 부정공개. 사용하는 행위

부정공개된 영업비밀을 악의. 중과실로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

선의취득 후 악의. 중과실에 의한 사용. 공개행위

# 형사적 제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 외국에서의 침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취득·사용·누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

## 국내에서의 침해

국내에서 취득·사용·누설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영업비밀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영업비밀

## 일반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 영업비밀의 보호대상은 특허보다 넓고 요식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 특허권을 얻는데 소요되는 시간·비용의 노력 없이도 보호가 가능
- 특허법을 보완하여 소프트웨어를 보호할 수 있음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영업비밀

## 오픈웨어 소프트웨어 ?

- 독점의 영역에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협력을 이끌어 냄
- 프로그램 저작물의 공유정신, 원시프로그램의 공개, 공개 라이선스
- 사용, 수정 및 재배포의 자유 보장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영업비밀

문

영업비밀 요건인 비공지성과의 문제

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특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영업형태

점

2차적 저작물의 영업비밀성  
(원 프로그램에 덧붙여지거나 개변됨으로써  
별도의 가치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 GPL 라이선스 위반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례

## 사안의 개요



피해회사 E사  
(인터넷 통신 전문업체)

*Etun(VPN 서비스 구동 프로그램) 개발*



직원 피고인 A  
(연구개발팀 근무)



직원 피고인 B,C

HL 프로그램 개발, 제공  
(Etun 기능을 일부 개선한 프로그램)



동종업계 H회사

피해회사 E사의 VPN고객정보, 제안서,  
영업실적, 견적서 등 영업자료 복제, 반출

# GPL 라이선스 위반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례

## 쟁점

- ‘Etun’ 프로그램이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을 기초로 GPL 라이선스 규칙에 따라 만든 것임
- 그럼에도 피해회사는 GPL 라이선스 규칙에 위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Etun’ 프로그램을 유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GPL 라이선스 위반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례

## 판 단

» 영업비밀성 긍정

»

단, 피해회사의 GPL 라이선스 위반은  
Vtun의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임

❖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능성 있음

»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

# 게임물 소스코드 침해 사례

## 사안의 개요



피해회사 N사  
(게임물 개발회사)



직원 피고인 A  
(프로그램 개발 팀장)



기획문서를 일본 회사에 유출



직원 피고인 B  
(게임개발실 그래픽팀과장)



캐릭터, 배경화면 등  
그래픽 자료 유출



직원 피고인 C



게임 소스코드 유출

# 게임물 소스코드 침해 사례

## 쟁점

**피**해회사의 게임소스코드가 인터넷상 공개된 소스코드를 참조하여 자체 개발한 소스파일인 점에 비추어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게임물 소스코드 침해 사례

## 판 단

- » 영업비밀성 긍정
- » 게임소스코드는 2001.부터 2003.경까지 제작, 2004.경부터 2005.경까지 실용화 단계. 100명에서 150여명의 연구원이 참여
- » 공지된 소스코드와 차별성이 있고 이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었음
- » 인터넷에 공개된 소스코드들을 개발중인 게임에 맞게 수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경쟁상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됨

# 웹사이트 소스코드 침해 사례

## 사안의 개요



피해회사

외국상품 구매대행쇼핑몰 업체

동종경쟁업체로 이직



직원인 피고인 A

웹사이트 등 개발 업무 담당



쇼핑몰 웹사이트 개발

피해회사의 약 200여개의 웹사이트 소스파일을 사용,  
동종경쟁업체 웹사이트 제작

# 웹사이트 소스코드 침해 사례

## 쟁점

웹사이트 소스코드 파일 중 일부가 공개된 소스코드 파일인바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웹사이트 소스코드 침해 사례

## 판 단

- » 영업비밀성 긍정
- » 공개된 소스파일을 이용목적에 맞게끔 수정,조합하여 회사의 시스템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기술력의 중요한 부분, 회사에서의 영업회의과정, 실제 시행에 따른 수정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여 다시 피해회사의 이용목적에 맞게 개별적으로 다시 제작된 점

# 위젯 플랫폼 영업비밀침해 사례

## 사안의 개요



**피해회사 M사**  
(유무선 연동 크로스  
플랫폼 개발회사)



**직원 피고인 A**  
(위젯 플랫폼 기술개발  
및 제안서 작성 업무)  
기술문서 내용을 사용



**협력업체 직원 피고인 B**  
(서버 개발 업무)

피해회사의 서버 내 파일을 일부 변형, 사용하여  
예외처리소스코드 완성 (유사율은 97% 내지 100%)



**피고인 E사**

멀티 윈도우  
위젯 서비스  
플랫폼 사업

# 위젯 플랫폼 영업비밀침해 사례

## 쟁점

피해회사의 예외처리소스코드가 오픈소스를 참조한 것인바, 실질적인 변개를 인정하여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위젯 플랫폼 영업비밀침해 사례

## 판 단

- » 영업비밀성 부정
- » 예외처리소스코드 중에 오픈소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서버프로그램에서 주요 코드라고 할 수 없어 경제적 유용성 요건 상실

# 마치며

- 오픈소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영업비밀로 보호할 필요성 있음
- 해당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하여는 지적재산권 제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이미 해당소스가 공개된 상태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2차적 저작물의 문제

원 소프트웨어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

원 소프트웨어보다 높은 완성도, 경제적 가치

정보보안 동의서, 접근대상자와 방법을 제한, 방화벽 설치, 로그시스템 등 비밀관리성

# 마치며

GPL 라이선스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가능성 있음

저작권법, 계약법의 추구이념과 영업비밀보호와의 독자성 문제

다만, 저작권법 또는 계약법의 추구이념을 영업비밀보호법이 형해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양 이념을 보다 조화롭게 해석하는 과제

#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정지은